

연구자문위원회 운영규칙

제	정 2005. 07. 13.
개	정 2012. 06. 08.
개	정 2015. 04. 30.
개	정 2015. 12. 30.
개	정 2018. 07. 27.
개	정 2021. 05. 24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연구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〈개정 2015.12.30.〉

제2조(기능)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.

1. 전라북도 및 연구원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
2. 주요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5.4.30., 2021.5.24.〉

②위원은 외부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〈개정 2021.5.24.〉

③위원장은 원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〈개정 2021.5.24.〉

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〈개정 2012.6.8.〉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연구자문위원회 운영규칙

②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2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연구기획부장이 된다.

<개정 2015.4.30., 2018.7.27.>

②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 및 회의록의 정리 보관 등을 담당한다.

제9조(실비보상) ①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·연구를 위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6.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4.30.›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2.30.›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7.27.›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5.24.›

이 규칙은 2021년도 6.1일부터 시행한다.